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2015-4호 (2015.11.3)

2. 위 근거와 관련, 「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4항제5의2호,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[별표 1]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: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,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1부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/ 협회업무/보험국)에서 다운로드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---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40 (2015.11.04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dm@kha.or.kr](mailto:ldm@kha.or.kr)